

#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

2020. 8. 19. 제정

2020. 12. 10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) 연구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연구센터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및 실험적 검증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빅데이터·인공지능(AI) 기반 신약개발에 관한 국내외 공동·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
2. 정부기관, 학계, 출연 연구기관,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
3. 연구기기, 시설, 기반기술,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
4. 대학원생, 교수, 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관련 기술 교육
5. 연구 관련 홈페이지 정보 구축
6.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4조(소장·부소장) ① 연구센터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약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소장은 약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연구센터에 제1연구부, 제2연구부, 제3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 제1연구부는 빅데이터·인공지능(AI) 기반 약물설계, 후보물질 도출 및 예측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제2연구부는 타겟 발굴 및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.

④ 제3연구부는 약효 검증 및 ADME/Tox 관련 연구업무를 담당한다.

⑤ 행정실은 기획, 학술, 재정, 홍보, 국제산학협력,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6조(연구위원 등) ① 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0.12.10.)

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(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한다)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약학대학장이 위촉한다.

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

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

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8조(연구교수) 연구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.

제9조(행정인력) ① 연구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약학대학장, 연구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약학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약학대학장이 된다.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, 연구원 임면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사업 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학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12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연구센터의 경비는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및 기타 연구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

부 칙(2020. 8. 19. 제정)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12. 10. 개정)  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